

# 19세기 제주 大靜縣 邑治 거주민의 혼인양상\*

—『大靜縣衙中日記』와 ‘東城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李成妊\*\*

- |                       |                    |
|-----------------------|--------------------|
| I. 머리말                | IV. 첩이 된 官婢와 그 자식들 |
| II. 大靜縣 邑治—지역과 자료소개   | V. 맺음말             |
| III. 지역보다 신분을 선택한 향리들 |                    |

##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大靜縣衙中日記』(1817~1818)와 ‘동성리호적중초’를 자료로 19세기 읍치 거주자들의 혼인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1) 일기와 호적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읍치에 거주민한 계층은 유향품관, 향리, 관노비로 이들이 지방관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향리들은 혼인을 할 때 지역적으로 밀접한 것보다 상대가 동일 계층인가 하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이들의 지역혼은 21%로 상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계층혼과 결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향리들은 혼인할 때 지역적인 인접도보다 계층적인 결속을 더욱 중시하였던 것이다. 지역혼은 계층혼의 결과 나타난 현상 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과 계층이 결합된 혼인형태는 향리들이 자신들의 기반을 유지하고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식이었다. 이동육과 하순득 가계는 지역과 계층을 결합하여 자신들의 결속을 강화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들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여러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4-AM0010).

\*\* 인하대 강사.

명의 아들과 사위가 동일지역의 향리직을 역임함으로써 자신들의 결속과 입지를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2) 일반적으로 노비들의 혼인은 양천교혼으로 설명된다. 특히 사노비는 주인가의 노비증식의도에 따라 교혼율이 높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관노비들도 이러한 측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국가의 공물로 관아에 귀속되었으므로 관아의 강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혼인할 수 없었다. 이는 지방관이나 향리가 관비를 취첩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지방관의 관기 솔혹은 심각한 사회현상 중의 하나였다. 관노비를 침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기솔혹을 제한하고자 하였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는 못하였다.

향리는 관노비를 관리 감독하는 담당자로서 관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빌미로 하여 손쉽게 관비를 취첩하였다. 특히 향리의 관기 취첩은 관노비를 양산하여 이에 대한 처리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3) 19세기까지 정절관념은 관노비와 같은 하층민에게 내면화되지 못하였다. 이들의 혼인에서 이혼과 재혼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이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살다가 떠나면 이혼이고, 또 다른 남자와 살면 재혼이었다. 그러나 이는 제주만의 현상이 아니라 하층민 사이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하층민이 정절관념의 부재뿐만 아니라 열악한 경제적인 여건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 • 주제어

읍치, 향리, 계층내혼, 지역내혼, 이혼, 재혼, 관기, 관비, 솔혹

## I. 머리말

제주지역은 고유한 생활방식과 지역적인 특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 중에서도 혼인과 가족·친족관계에 대해서는 사회학과 인류학적 관점에서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sup>1)</sup>

특히 유교화의 정도, 생활환경,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제주에서는 철저한 장남분가, 諸子의 균분상속, 문중조직이나 계층의식의 미발달, 지역적으로 밀접한 동혼권, 자유로운 이혼과 재혼, 만연한 취첩 현상 등이 나타났다. 이는 제주인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밝혀냈다는 면에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가족관계나 친족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들 연구는 기본적으로 육지와와의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 육지의 몇몇 한정된 사례를 대상으로<sup>2)</sup> 제주도의 특성을 구명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본고는 19세기 제주 대정현의 읍치가 소재한 동성리의 혼인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동안 적지 않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주로 해안가 주민에 집중하여 읍치 지역에 관심을 가진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sup>3)</sup> 조선시대 읍치는 중앙정부가 파견과 지방관과 현지의 향리·관노비들이 행정업무를 주관하던 행정중심지이다.<sup>4)</sup> 읍치는 군현민들의 통치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곳이며, 다양한 신분을

- 1) 崔在錫, 『濟州道の 親族組織』, 일지사, 1979; 津波高志, 『濟州道の 通婚圈』, 玄容駿博士 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編, 『濟州道 言語民俗論叢』, 제주문화 1992; 김창민 「범주로서의 친족—제주도의 권당」, 『한국문화인류학』 24, 1992; 李昌基, 『濟州道の 人口와 家族』, 영남대 출판부, 1999;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 출판부, 1999; 권오정, 「19세기 제주도 촌락의 촌락내혼율과 촌락 내 혼인관계 연구—제주 대정현 사례와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3, 2003; 은기수, 「19세기 전반기 제주사회의 신분과 혼인—『사계리호적』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연구』, 나남출판, 2003.
- 2) 김택규, 『씨족부락의 구조연구』, 일조각, 1979; 조강희 「영남지방의 혼반연구—진성이씨 퇴계파 중손을 중심으로 한 추적조사」, 『민족문화논총』 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4; 「전통사회의 혼인에서 지연의 문제」, 『민족문화논총』 16, 1996; 권내현, 「조선 후기 동족촌락 구성원의 통혼양상—단성현 신등면 안동권씨 사례」, 『한국사연구』 132, 2006.
- 3) 대정현 향리에 대해서는 金東楡의 연구가 참고된다. 金東楡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 연구—『대정현호적중초』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24~151면.
- 4) 읍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한영국, 「府의 호구와 그 構成分布」, 『大丘

가진 사람들의 생활공간으로 향리와 관속이 거주민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 연구를 위해 『大靜縣衙中日記』(이하 ‘일기’로 통칭)와 ‘東城里戶籍中草’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교차 검토하면 19세기 읍치의 혼인양상이 들어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곧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혼인관계를 호적중초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대정현 동성리 호적중초는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거의 매 식년 빠지지 않고 남아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부세문제와 관련되겠지만, 대정현 호적중초는 다른 지역의 호적자료에 비하여 인구에 대한 파악이 철저하다. 이는 통혼권이나 혼인양상을 살피는데 있어서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 II. 大靜縣 邑治—지역과 자료소개

조선시대 대정현은 제주목, 정의현과 더불어 전라도에 속했지만, 실제로는 제주목사의 통제를 받았다. 병와 李衡祥이 남긴 『耽羅巡歷圖』(1702, 숙종 28)에 의하면 대정현은 읍리 1리, 동면 9리, 서면 12리로 전체 22리였으며, 호는 797호, 전답은 149結 이었다.<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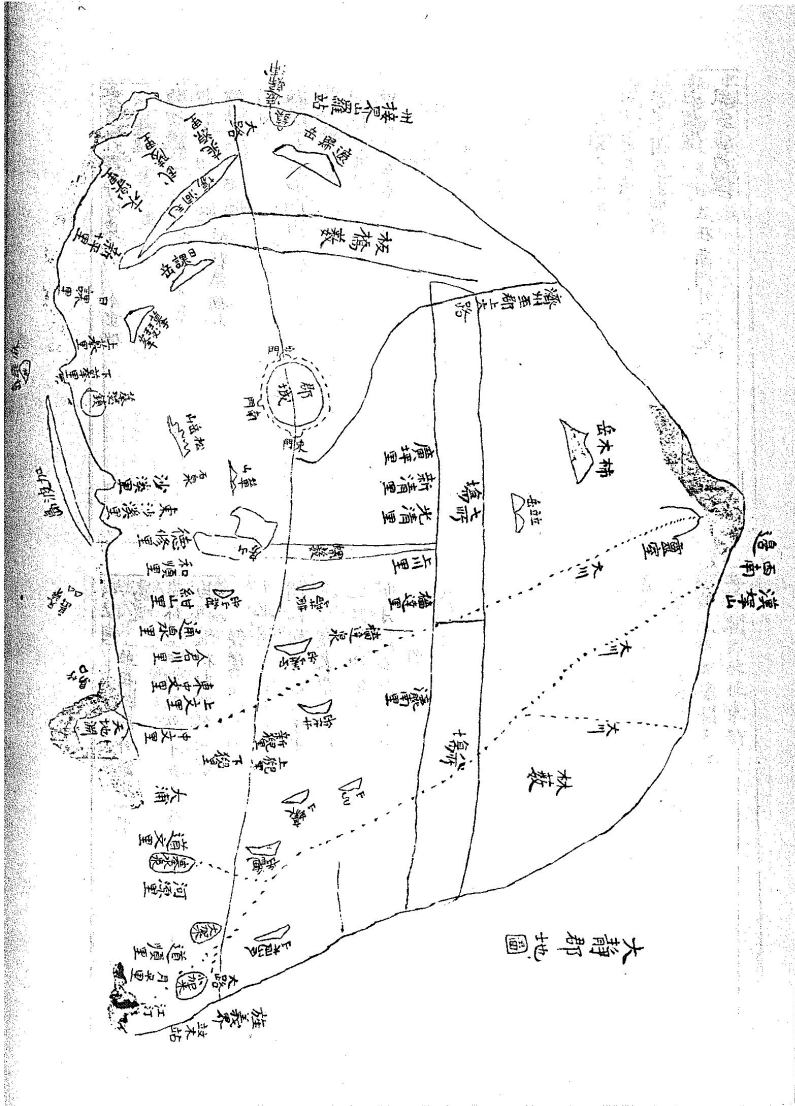
정조 4년(1780)에 간행된 『제주읍지』에는 대정현을 좌·우면으로 구분하였으며, 동성리·금물로리·자단리·범천리·동수리·감산리·통천리·서성리·하모슬리·일파리·둔포리·상모슬리는 우면에, 창신리·상아래리·하아래리·성산리·장달리·중문리·대포리·하월리·석송리·강정리는 좌면에 속하였다. 즉, 우면의 동성리가 대정현의 읍치였다. 동성리는 대정현 22개 리 중에서 비교적 큰 규모를 지니고 있었다. 호구는 123戶, 595口로(남:253, 여:342) 중문리(호:154, 구:734), 상모슬리(호:145, 구:761)<sup>6)</sup> 다음으로 擔稅 능력을 지닌 지역이었다.

市史』1, 1973; 이훈상 「조선시대 읍치사회의 구조와 제의—향리집단의 정체성 혼란과 읍치사회의 유희화」, 『역사학보』147, 1995; 권내현 「朝鮮後期 邑治와 그 居民 構成에 관한 一考察」, 『韓國史學報』3·4합, 1998.

5) 『大靜操點圖』, 『耽羅巡歷圖』, 제주도, 2000, 69면.

6) 『濟州邑誌』(1780) 坊里條.

<그림 1> 대정현의 別別 分포 양상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동성리는 한라산 중하단의 郡城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라산을 기준으로 山村·中山村·海村으로 구분하는데, 동성리는 중산촌 지역에 속한다. 이 지역은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 생업이 달랐고 주민의 구성과 계층의식이 달랐다고 한다. 중산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유족하며, 계층의식도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sup>7)</sup>

『대정현아중일기』는 대정현감을 지낸 金仁澤이 4년간(1817~1820) 작성한 업무 일지이다. 이는 제주지역에 일찍부터 알려진 자료이다.<sup>8)</sup> 김인택은 순조 17년(1817) 3월 30일 대정현감에 제수되어 40일간의 고단한 노정을 거쳐 5월 29일에 도착한다. 도착한 날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다음해 3월 3일에 마치고 있다.<sup>9)</sup>

일기의 주요 내용은 수령의 대내외적인 업무와 그 처결과정, 관속·향리·관노의 업무분장실태, 지방관기의 존재실태, 제주 목장의 운영과정, 지역민의 입역체계 등에 관한 것이다. 즉, 일기는 수령의 업무수행과정과 대정현 지방관아의 운영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외에도 일기는 자유로운 성관념과 혼인양상, 첩을 얻는 모습과 이로 인한 문제 등 제주인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

동성리 호적은 中草와 統籍의<sup>10)</sup> 형태로 1771년부터 1922년까지 43개 식년분이 남아있다.<sup>11)</sup>

7) 津波高志, 『濟州道の 通婚圖』, 玄容駿博士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編 『濟州道 言語民俗論叢』, 제주문화, 1992, 574~577면에서 재인용.

8) 이 자료는 본 연구팀의 연구원인 김수희 선생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제주의 홍순만 선생으로부터 원문을 구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표한다.

9) 『대정현아중일기』는 4년간의 일기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1817년 3월부터 1818년 3월 초까지 1년간의 기록뿐이다. 나머지 3년의 기록은 서지학자인 故 李鍾學 선생이 소장하고 있다하여 수소문해 보았으나 지금까지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완하고자 한다.

10) 제주에서는 호적중초와 함께 통적이 작성되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자료이다. 통적은 호적중초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향촌사회에서 향리들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자료이다. 통적은 중초와 달리 주호와 처의 四祖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이다.

11) 김동전이 조사할 당시에 있었던 1786년, 1858년, 1876년 호적중초가 현존하지 않는다. 중간에 유실된 것으로 보인다(김동전, 앞의 논문, 34~35면).

<표 1> 동성리 호적중초의 현존상황

년 도	자 료	년 도	자 료
1771	통적(동성리)	1864	호적중초(동성리)
1777	통적(동성리)	1867	호적중초(동성리)
1780	통적(동성리)	1870	호적중초(동성리)
1783	호적중초(동성리)	1873	호적중초(동성리)
1789	호적중초(동성리)	1876	호적중초(동성리)
1799	통적(동성리)	1879	호적중초(안성리)
1807	호적중초(동성리)	1882	호적중초(안성리)
1810	호적중초(동성리)	1885	호적중초(안성리)
1813	호적중초(동성리)	1888	호적중초(안성리)
1816	호적중초(동성리)	1891	호적중초(안성리)
1819	호적중초(동성리)	1894	통적(안성리)
1822	호적중초(동성리)	1896	호적중초(안성리)
1825	호적중초(동성리)	1897	통적(안성리)
1828	호적중초(동성리)	1898	호적중초(안성리)
1831	호적중초(동성리)	1899	호적중초(안성리)
1834	호적중초(동성리)	1900	호적중초(안성리)
1840	호적중초(동성리)	1901	호적중초(안성리)
1843	호적중초(동성리)	1902	호적중초(안성리)
1849	호적중초(동성리)	1905	호적중초(안성리)
1852	통적(동성리)	1908	호적중초(안성리)
1855	호적중초(동성리)	1922	호적중초(안성리)
1861	호적중초(동성리)	모두 43개 식년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東城里는 1879년에 仁城里 와 安城里 로 분리된다.<sup>12)</sup> 따라서 1876년까지 사용되던 ‘동성리호적중초’라는 표제가 ‘안성리호적중초’로 바뀌었다.<sup>13)</sup> 동성리의 경우 식년별로 중초와 통적이 모두 전하기도 하지만, 중초와 통적이 개별적으로 남아있기도 하다. 따라서 중초를 대상으로 하되 중초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적을 활용하기로 한다. 통적이 주호와 처의 四祖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12) 「安城里 光緒五年正月日己卯式戶籍中草」 표제 참조. 이는 김동전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김동전, 앞의 논문, 10~22면).

13) 1879년부터 동성리가 안성리와 인성리로 분화되므로 호적중초도 2부씩 남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는(3개 식년) 2부씩 남아있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1879년 이후의 호적중초는 전 시기에 비하여 불안정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 Ⅲ. 지역보다 신분을 선택한 鄉吏들

읍치 거주인의 통혼권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읍치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기와 호적중초를 활용하였다. 즉, 일기에 등장하는 인물을 호적중초에서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표 2>를 얻을 수 있었다. 김인택이 등재자의 신분과 거주지를 명확히 하고자 했던 사실이, 등재자의 거주여부를 판단하고 신분별 계층화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표 2>는 일기에 등재된 인물 중에 읍치지역에 거주한다고 여겨지는 인물을 계층별로 분류한 것이다. 일기에 등장해도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고 명기된 자들은 제외하였다.

<표 2> 일기 등재자의 계층별 분포

	호적등재(%)		호적부등재(%)		합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양반	0	0	8	100.0	8	7.3
유향품관	5	27.8	13	72.2	18	16.4
군관층	3	75.0	1	25.0	4	3.6
향리	14	35.9	25	64.1	39	35.5
양인	1	33.3	2	66.6	3	2.7
관노비	5	55.6	4	44.4	9	8.2
신분불명	1	3.5	28	96.5	29	26.4
합계	29	26.4	81	73.6	전체 110명	

110명 중 29명이 일기와 호적중초에 이중으로 등재되고 있는데, 이들을 19세기 전반기 대정현 읍치 거주자로 볼 수 있다. 유향품관, 향리, 관노와 같은 관속으로 지방관아의 운영을 담당했던 자들이다.<sup>14)</sup>

전체 인원 중에 26.4%(29명)는 호적에 등재되었지만 나머지(81명, 73.6%)는 등재되지 못하였다. 거주지나 계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26.4%(110명 중 29명)에 이르러 등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호적등재율의 저조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동성리에 거주하지 않은

14) 권내현은 단성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향리나 하급 아전을 비롯한 관속이 읍치와 그 인근에 거주한다고 보았다(앞의 1998 논문, 356~362면).



경우이다. 縣人·邑人이라 표시된 경우 동성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동성리에 거주하지만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호적의 호구 등재율과 관련이 있다.<sup>15)</sup> 즉, 전체 인구 중에 호적에 등재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자료의 특성상 동성리에 거주하더라도 호적에 등재되지 않으면 혼인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읍치 거주민은 양반, 유향품관, 군관, 향리, 양인, 관노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처가가 확인된 경우는 29건 중 계층혼과 지역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14건에 불과하다. 이는 호적에 주호로 등재되어야 주호와 처의 四祖가 기록되며, 사조를 알아야 통혼권을 파악할 수 있다. 계층별로는 향리·畝漢<sup>16)</sup>·노비로 구분되나 그 중심은 향리와 관노이다.<sup>17)</sup>

먼저 이들의 계층내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호와 처의 四祖를 비교해 보았다.

<표 3> 읍치 거주민의 사조 직역

성명	주호	父	祖	曾祖	外祖	식년
한순운	주호	서원	노직가선대부	서원	서원	1819
	처	소사	호장	기관	관노	
이동엽	주호	전장관	전조방장	기관	기관	1807
	처	소사	전장관	무과급제	영직찰방	
송시즙	주호	시장관	무과급제전어 영조관	성장	노직절충장군	1810
	처	소사	성장	전력부위검사복	업무	
강효겸	주호	향리	전호장	통정대부	통정대부	1807
	처	소사	전장관	전장관	학생노직통정 대부	
이동욱	주호	향리	전조방장	기관	기관	1810
	처	소사	병정교위용양 위부사과	전파총	통정대부	

15) 정진영에 의하면 단성호적과 족보와 동계를 비교검토해본 결과 전체 호구의 30~50% 정도가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다고 한다(『18세기 호적대장 호구 기록의 검토』, 『이수건 정년 기념 한국중세사논총』, 2000).

16) 김동전은 답한은 관둔전 경작자로 공노비의 일종으로 보았다(앞의 논문, 152~180면).

17)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김동진, 『제주 대정현 향리층의 신분변동』, 『사학지』 28, 1995; 권기중, 『19세기 제주 대정현 향리층의 호구 변동』, 『대동문화연구』 57, 2007. 김동전은 향리층의 신분변동여부에 주목하였으며, 권기중은 향리층의 호구등재 양상에 초점을 두었다.

강봉상	주호	나장	이령	서원	서원	이령	1807
	처	父	명월방군	명월리령		양인	
장만보	주호	파총	업무	남속통정	남속통정	노직통정	1843
	처	소사	마대별장	호장	서원	호장	
이명훈	주호	공생	전천총		기관	업무	1813
	처	소사	전천총	성장	진무	품관	
하순득	주호	전호장	전호장	노직가선대부	노직가선대부	기관	1807
	처	소사	노직가선대부	노직가선대부	남속통정대부	남가선대부	
이춘향	주호	향리	기관	기관	기관	노직가선대부	1807
	처	소사	무과출신	남속통정	남속통정	전성장	
김선발	주호	담한	정병	노직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가선대부	양인	1816
	처	父	양인				
김몽득	주호	관노	양인	한량	한량	학생	1799
	처	내자시비					
		소사	통정	진무	노직통정	정병	
강필정	주호	관노	양인	양인	업무	노직가선	1807
	처	父	양인	양인	업무	노직가선	
최필향	주호	관노	학생				1813
	처	父	직군	통정			

\* 식년은 부부가 함께 등재된 가장 이른 시기로 하였다.

이들 향리는 기본적으로 계층내혼을 통해 자신들의 결속을 강화하였다.<sup>18)</sup> 제주도의 직역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주호와 처가의 사조가 확연히 구분되지는 않는다. 처의 경우 향리는 주로 소사(조이)를 그들보다 신분이 낮았던 담한과 관노는 父를 사용하고 있다.<sup>19)</sup> 강봉상과 김몽득의 경우 직역과 처의 호칭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기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강봉상은 1807년 호적에 자신은 나장으로, 부인은 父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일기에서는 체임마색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체임마색은 상당히 비중 있는 직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봉상은 원래 사령이었으나 전임 수령 때에 여러 번 육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정되어 체임마색에 차등된 것이다.<sup>20)</sup> 즉, 원래는 미천한 출신이었으나 자신의 노력으로 입신출세한 경우에 해당한다.

18) 김동전은 대정현 향리층의 60%가 신분내혼을 하였으며 양반과의 혼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앞의 논문, 125~151면).

19) 여성의 호칭은 계층 구분의 기준이 된다(김경란, 「호적대장의 여성호칭 규정과 성격—조선 후기 『단성현호적대장』의 여성파악실태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142면).

20)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8월 30일조.

김몽득의 경우 자신과 부의 직역이 조·증조·외조의 직역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김몽득이 관노인 것은 母 무릉이 관비이기 때문이다. 실제 김몽득은 庫子로 관청의 허드렛일을 담당하고 있었다.<sup>21)</sup> 전처와 후처의 호칭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전처 금덕은 내자시비로 12세 연하의 처녀였으나 입소사는 11세 연상으로 과년한(26세) 딸을 데리고 재혼한 경우이다.<sup>22)</sup>

그러면 이제 이들 향리층의 지역내혼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주지역의 지역내혼도 다양한 형태로 불리고 있다. 초기 연구자들은 '부락내혼'이라 하였으나 부락이 일본의 하층민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라 하여 최근에는 촌락내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sup>23)</sup> 그러나 촌락의 범주도 자연촌락인지, 里 단위인지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동성리 호적 등재여부만 확인하였다.

읍치 거주민의 지역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였다. 즉, 일기와 호적에 등재된 자들을 추출한 다음, 처부의 동성리 호적 등재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여기서는 장인과 처남이 주호로 등재된 경우만 지역혼으로 간주하였다.

<표 4> 읍치 거주민의 처가 등재여부

성명	직역/신분	처부의 등재여부		첩부의 등재여부	
		성명(직역)	등재여부	성명(직역)	등재여부
한순운	향리	이춘백(호장)	×		
이동엽	향리	강민항(부과급제)	○		
송시즙	향리	유춘신(성장)	×	임봉빈(업부)	×
강효검	향리	강석희(전장관)	○		
이동옥	향리	이춘택(병절교위용양위부호군)	×		
김정옥	향리			김과정	×
강봉상	향리	김업용(명월방군)	×	김 乂	
장만보	향리	조영면(마대별장)	×		
이명훈	향리	고만겸(전천총)	×		
하순득	향리	송초정(노직가선대부)	○	함천장(양인)	×

21)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6월 18일·19일 일조.

22) 김몽득의 모 무릉은 관비이다. 김몽득은 17세(1783)부터 65세(1831)까지 호적에 등재되는데, 직역은 관노·집사·업부로 바뀌고 있다(동성리 호적중초).

23) 최재석, 앞의 책: 津波高志, 앞의 논문: 이상기, 앞의 책: 김혜숙, 앞의 책: 권오정, 앞의 논문.

이춘향	향리	김응태(파총)	×	강위민	×
김선발	답한	홍방순(양인)	×	여덕정	×
김몽득	관노	금덕		김 父	
		임중계(통정)	×		
강필정	관노	문을발(양인)	×		
최필항	관노	홍인영(직군)	×		
계			14		5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절반이 본처 이외에 첩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호적에 등재된 자들 중 첩을 얻은 경우가 50%에 이르고 있다. 이는 향리 사회에 만연한 취첩현상을 보여준다.

전체에서 처가가 확인된 사례는 21.4%(14건 중 3건)에 불과하다. 즉 이들의 지역혼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저조한 편이다.<sup>24)</sup>

그러나 이것도 순수한 의미의 지역혼이 아니라 지역혼과 계층혼이 결합된 형태이다. 즉, 향리들은 혼인에 있어 지역적인 인접도보다 계층적인 결속을 우선시하였던 것이다.

향리가 관아 운영의 담당자라는 측면에서 지역혼은 자신들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장관 강민항과 납속가선 송초정의 혼인관계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이동욱과 하순득 처가 가계

이동욱 처가가계	하순득 처가가계
父 강민항(장관) 1. 딸 지봉하(전장관) 2. 딸 이동엽(전장관) 3. 딸 지원복(장관) 4. 아들 필무(업무, 장관)	父 송초정(납속가선) 1. 아들 송영발(업무) 2. 아들 송영양(전성장) 3. 딸 하순득(호장) 4. 아들 송영현(공생)

이동욱은 강민항의 사위로 19세기 전반 관청색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제주에

24) 사계리는 30%내외, 덕수리는 40%, 대포리는 34.1→40.9→52.7%로 파악되고 있다(이창기, 김혜숙, 권오정 논문 참조).

서 비장이 왔을 때 支供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감 김인택으로부터 곤장 9대를 맞는 수모를 겪는다.<sup>25)</sup> 강민항의 직역은 장관으로 아들 한 명과 사위 셋은 동성리 지역에서 향리직을 담당하고 있었다. 하순득은 송초정의 사위로 1817년 호장에 오른 인물이다.<sup>26)</sup> 송초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의 사위 한 명과 아들 셋이 모두 동일 지역에서 향리직을 역임하였다. 즉, 이들은 혼인을 통해 결속을 강화하고 권한을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 Ⅳ. 첩이 된 官婢와 그 자식들

노비의 혼인은 주인의 노비증식 의도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양친교혼이 확대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27)</sup> 그러나 관노비도 지방관과 향리의 관리감독하에 있다는 점에서 혼인에 있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았다. 즉, 관비도 국가의 公物로 관아에 귀속되어 지방관이나 향리의 강권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 1. 지방관과 관기

순조 17년(1817) 3월 30일 대정현감에 제수된 金仁澤은 임금께 下職肅拜를 하고 곧바로 대정현으로 떠난다. 그리고 두 달여에 이르는 고단한 노정을 거쳐 5월 29일에 대정현에 도착한다. 그는 가족을 거느리지 않고 혼자 부임하였다.

조선시대에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방관은 가족을 거느리고 부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는 거리가 너무 멀고 지역도 험난하여 혼자 부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방관이 혼자 부임하면 수발을 담당할 관기를 차정하게 된다. 이는 지방관의 고된 업무를 위안하려는 국가적인 시책이었다.<sup>28)</sup> 관기는 관비 중에 姿色과 才藝를 기

25)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8월 7일조

26)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12월 28일조

27) 한영국, 「조선중엽의 노비결혼양태—1609년의 울산부호적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75·76합·77, 1977·1978.

준으로 선택하며, 官案을 작성하여 관리감독하게 된다. 기녀는 16세부터 50세까지 入番制로 入役한다. 일기에는 官婢와 官妓가 혼용되고 있지만, 이들 간에도 일정한 위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기생이 잘못하면 관비로 降定될 뿐만 아니라 정배되기도 하였다.<sup>29)</sup>

官妓는 국가의 公物 이므로 수령이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관기가 지방관의 잠자리 시중을 드는 것은 일상화된 일이었다.<sup>30)</sup> 지방관의 관기 술혹은 심각한 사회현상 중의 하나였다. 국가에서는 술혹한 관기를 본거지로 쇠환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sup>31)</sup>

김인택이 대정현에 재임하는 동안 瀛山月과 洞庭月이 시침을 들었다. 瀛山月은 김인택의 房妓로<sup>32)</sup> 정해져<sup>33)</sup> 3개월 동안 함께 생활한다. 그러나 김인택은 영산월을 흠족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영산월이 방자하다 하여 회초리질을 하는가 하면<sup>34)</sup> 나아가 冊室에게 욕을 했다하여 쫓아내고 있다.<sup>35)</sup> 영산월도 현감의 방비로 차정된 것을 기화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김인택은 洞庭月을 방비로 삼는다. 동정월은 제주목 소속으로 김인택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sup>36)</sup> 알게 된 사이였다.<sup>37)</sup> 당시 동정월은 21세의 어린 나이였는데, 아버지는 제주 향리 金光龍이었다.<sup>38)</sup> 김인택은 동정월을 방비로 삼고자 말과 사람을 제주에 데려왔다.<sup>39)</sup> 인근 군현의 기녀를 방비로 삼은 것은 불법적이라고 여겨지지

28) 이성임, 「16세기 양반관료의 外情」, 『古文書研究』 23, 2003, 32~39면

29) 정배된 營妓 洞庭春의 죄목이 특이하다. 영문(제주목) 冊室 황서방이 여러 번 수청을 요구하여도 듣지 않고 영문에서 강권해도 소용이 없자 황서방이 서울로 떠나 버렸다. 즉, 동정춘이 정배된 원인은 자신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중앙 관직자가 떠나버리게 한 데에 있었다(『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6월 20일조).

30) 이성임, 앞의 논문.

31) 이성임, 앞의 논문.

32) 지방관의 잠자리 시중을 드는 기녀는 房妓·薦枕妓·娼妓·差備·侍兒 등으로 불린다. 이는 편의적인 호칭으로 공식적으로는 관비가 맞다.

33)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6월 2일조

34)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7월 17일조

35)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9월 2일조

36)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10월 21일조

37)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11월 13일

38)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11월 13일조

만 이와 관련된 제제는 보이지 않는다.

주목되는 것은 동정월이 출신성분이다. 즉, 동정월은 향리가 관기를 취첩하여 낳은 것이다. 동정월의 부가 향리이지만 종모법에 따라 모의 신분을 계승하였던 것이다. 이후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양반 관직자가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했다.<sup>40)</sup>

## 2. 향리의 취첩현상

향리에게는 지방관아 관노비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들은 이러한 권한을 빌미로 손쉽게 취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향리 관비취첩은 관노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41)</sup>

이러한 모습은 工禮房을 역임한 李春恒<sup>42)</sup> 가계에서도 확인된다. 이춘항은 1807년(32세)부터 1848년(74세)까지 40여 년 동안 호적에 등재된 상층 향리이다. 그는 본처(김소사) 이외에 3명의 첩을 두고 있었다. 첩 姜父는 이춘항보다 7살 연상이었으며, 玄父는 7살 연하였다. 이들은 사망할 때까지 이춘항과 함께 한 것으로 보인다.

이춘항은 74세에 21세의 강소사를 취첩하는데, 이들의 나이차는 무려 53세였다. 강소사가 退婢 월매의 질녀라는 사실로 보아 강소사의 신분도 관비였을 것으로 보인다. 강소사는 1843년까지 월매의 호에 등재되었으나 1849년 이춘항의 첩으로 등재되고 있다. 이는 권세 있는 상층 향리가 관권을 통해 관비를 취첩한 사례의 전형이다.

체임마색 姜鳳祥은 호적에 나장으로 등장한다. 그의 호에는 처와 첩, 그리고 전처의 딸 2명 등재되었다.<sup>43)</sup> 전처의 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예도 본처는 아닌 것

39)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11월 26일조.

40) 관기의 솔혹현상은 『眉巖日記』에서도 확인된다. 16세기에는 기녀를 솔혹할 때 京妓의 奉 足으로 차정하였다(이성임, 앞의 논문).

41) 이와 관련하여 假吏層이 관노층으로 향리나 관비와 혈연적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 권기중, 「17세기 가리층의 형성배경과 존재양태 -단성현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28, 1998.

42)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12월 28일조.

으로 보인다. 여기에 崔德이라는 첩도 있었다.<sup>44)</sup> 도강월까지 합하면 처가 2명, 첩이 3명이다.

姜鳳祥은 첩과 도강월이 싸우고 본처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관아에 고발된다. 관아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그리고 강봉상을 체임마색에서 사령으로 降定하였다. 1817년 6월 도강월과 강봉상의 첩은 심하게 싸우게 된다. 도강월의 얼굴에 피가 넘쳐 흐르자 도강월의 오빠 김몽득(庫子)이 참다못해 관아에 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강봉상은 곤장 7대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sup>45)</sup>

강봉상의 처첩 간에 심각한 갈등이 형성되어 있었다. 1817년 9월 첩 최덕이가 본처를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자<sup>46)</sup> 처는 남편과의 동거를 거절하였다. 결국 강봉상은 어렵게 올라간 체임마색에서 사령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 대정현감은 처에게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즉, 부인이 남편과의 동거를 강력히 거절하자 회초리 50대를 쳤다.<sup>47)</sup>

### 3. 관노비의 혼인관계

하층민의 경우 이혼과 재혼이 흔한 현상이었으므로 혼인은 그리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이혼이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층민의 경우 살다가 떠나면 이혼이고, 또 다른 남자와 살면 재혼인 것이다. 특히 호적상에는 데리고 들어온 자식의 존재여부가(義子女로 등재) 재혼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관노 김몽득 가계를 통해 하층민의 혼인양태를 살필 수 있다. 대정현감 김인택의 방비였던 영산월은 渡江月의 딸이고, 외삼촌은 金夢得이다.<sup>48)</sup> 도강월과 金夢得의<sup>49)</sup> 딸이 다른 남매사이이다.

43) 1807년 '동성리 호적중초' 7리 30통 4호.

44)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9월 18일조.

45)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6월 18일조.

46)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9월 18일조.

47)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8월 30일조.

48)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6월 18일조.

49)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7월 18일조.



<그림 2> 庫子 金夢得의 가계

☆무룡(관비)	
남편 1, 진재(양인)-----	☆아들 김몽득(관노)
남편 2, 남편 양인룡(전좌수)-----	☆딸 도강월(관비)
	-----딸 양섬
☆김몽득(관노, 집사, 업무)	
전처 금덕(내자시비)-----	아들 탐봉
후처 임소사(통정 증계), 임소사도 재혼, 의녀 임예	
첩 김예, 첩도 재혼, 의녀 김예	
☆도강월(관비)	
남편 1, □□□ -----	딸, 영산월(관비, 대정현감 김인택의 방비)
남편 2, 체임마색 강봉상 -----	딸, 강상의

김몽득의 모인 무룡은 남편이 두 명이였다. 첫째는 김몽득의 낳인 양인 진재이다. 이는 정상적인 혼인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김몽득의 祖가 서원, 外祖가 한량인 것으로 보아 이들 가계는 말단 향리였다. 김몽득은 어미의 신분을 좇아 대정현 관아에서 庫子로 있었다.<sup>50)</sup>

무룡은 또 좌수를 역임한 양인룡과의 사이에서 도강월과 양섬을 낳는다. 이는 정상적인 혼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즉, 좌수 양인룡이 관비 무룡을 취하여 도강월과 양섬을 낳은 것이다.

관노였던 김몽득도 2명의 처와 1명의 첩을 두었다. 전처 금덕은 내자시비로 김몽득보다 12세 연하였다. 아들 탐봉은 김몽득과 금덕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보인다. 김몽득은 전처와 헤어진 뒤 자신보다 11세 연상인 임소사와 재혼한다. 임소사는 통정 증계의 딸이다. 임소사도 초혼은 아니었다. 그녀는 과년한 딸을(26세) 데리고 왔으며, 곧 김몽득의 義女로 등재된다. 임소사가 더 이상 호적에 등재되지 않자 김예가 첩으로 등재되고 있다. 김예를 언제 취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김예도 초혼은 아니었으며, 그녀가 데리고 온 딸(10세)도 김몽득의 호에 의녀로 등재되었다.

일기에서는 영산월이 도강월의 딸이라고 하나<sup>51)</sup> 그녀가 호적에 등재되지 않아 父

50)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6월 18일·11월 1일조, 김몽득에 대해선 주22 참조.

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아버가 누구든 간에 도강월이 관비이므로 그 딸인 영산월도 관비일 수밖에 없다. 이후 도강월은 강봉상의 첩이 되어 딸 강상의를 낳게 된다. 도강월이 강봉상의 첩으로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도강월과 강봉상의 첩이 심하게 싸운 것을 통해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하층민의 정절관념은 19세기까지도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817년 9월 安光臣이 처와 간통한 죄목으로 고발되자 姜善慶과 姜大孫을 고발하자 김인택은 이들을 敎子로 降定했다. 이 사건은 안광신의 처가 시어머니가 싸움을 한 데서 발단이 된다. 싸움을 하고 화가 난 안광신의 처는 큰 아들은 강선경에게, 작은 아들은 강대손에게 데려다 주면서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했다. 결국, 남의 자식을 자신의 아들로 알고 10여 년을 키워왔다는 사실에 화가 난 안광신은 자신의 처와 두 남자를 관에 고발하였던 것이다.<sup>52)</sup>

그러나 이는 제주만의 특성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조선 중기 육지의 양인 朴義菴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박의훤은 모두 다섯 명의 처를 얻었는데 본처에서 네 번째 처까지는 다른 남자와 간통하여 떠나갔다. 제일 마지막에 얻은 여배만이 박의훤과 오랫동안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분재기에는 첫 번째 처만을 본처라 하고 나머지 처는 次妻라 기록하고 있다.<sup>53)</sup> 즉, 이들간에도 정절관념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처와 첩의 구분도 상당히 모호하다. 즉, 하층민에게 있어 이혼과 재혼은 흔한 일이었으며, 이는 육지와 제주 구별할 것 없이 하층민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 사회현상이었던 것이다.

## V. 맺음말

본고에서는 19세기 전반 대정현감 金仁澤이 작성한 『大靜縣衙中日記』(1817~1818)와 1777년부터 1920년까지 남아있는 ‘동성리호적중초’를 자료로 19세기 읍치 거주자들의 혼인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1) 일기와 호적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읍치에 거주민한 계층은 유향품관, 향리, 관

51) 『대정현아중일기』, 1817년 6월 18일조

52) 『대정현관아일기』, 1817년 9월 27일조

53) 문숙자, 「양인의 혼인과 부부생활」, 『조선시대생활사』 2, 2000.

노비로 이들이 지방관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향리들은 혼인을 할 때 지역적으로 밀접한 것보다 상대가 동일 계층인가 하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이들의 지역혼은 21%로 상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계층혼과 결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향리들은 혼인할 때 지역적인 인접도보다 계층적인 결속을 더욱 중시하였던 것이다. 지역혼은 계층혼의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과 계층이 결합된 혼인형태는 향리들이 자신들의 기반을 유지하고 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식이었다. 이동육과 하순득 가계는 지역과 계층을 결합하여 자신들의 결속을 강화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그들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여러 명의 아들과 사위가 동일지역의 향리직을 역임함으로써 자신들의 결속과 입지를 강화시켜 나갔던 것이다.

2) 일반적으로 노비들의 혼인은 양친교혼으로 설명된다. 특히 사노비는 주인가의 노비증식의도에 따라 교혼율이 높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관노비들도 이러한 측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국가의 공물로 관아에 귀속되었으므로 관아의 강권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혼인할 수 없었다. 이는 지방관이나 향리가 관비를 취첩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지방관의 관기 솔혹은 심각한 사회현상 중의 하나였다. 관노비를 침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기솔혹을 제한하고자 하였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는 못하였다.

향리는 관노비를 관리 감독하는 담당자로서 관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빌미로 하여 손쉽게 관비를 취첩하였다. 특히 향리의 관기 취첩은 관노비를 양산하여 이에 대한 처리가 요구되기도 하였다.

3) 19세기까지 정절관념은 관노비와 같은 하층민에게 내면화되지 못하였다. 이들의 혼인에서 이혼과 재혼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이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살다가 떠나면 이혼이고, 또 다른 남자와 살면 재혼이었다. 그러나 이는 제주만의 현상이 아니라 하층민 사이에서 일어난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하층민이 정절관념의 부재뿐만 아니라 열악한 경제적인 여건도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 참고문헌

- ‘濟州大靜縣東城里通籍’
- ‘濟州大靜縣東城里戶籍中草’
- 金仁澤, 『大靜縣衙中日記』(1817~ 1818)
  
- 김택규, 『씨족부락의 구조연구』, 일조각, 1979
-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켄당』, 제주대 출판부, 1999
- 李昌基, 『濟州道の人口와 家族』, 영남대 출판부, 1999
- 崔在錫, 『濟州道の 親族組織』, 일지사 1979
  
- 권기중, 「17세기 가리층의 형성배경과 존재양태—단성현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28, 1998
- 권내현, 「조선후기 동족촌락 구성원의 통혼양상—단성현 신등면 안동권씨 사례」, 『한국사연구』 132, 2006
- ———, 「朝鮮後期 邑治와 그 住民 構成에 관한 一考察」, 『韓國史學報』 3·4합, 1998
- 권오정, 「19세기 제주도 촌락의 촌락내혼율과 촌락 내 혼인관계 연구—제주대정현 사계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23, 2003
- 김경란, 「호적대장의 여성호칭 규정과 성격—조선후기 『단성현호적대장』의 여성피약실태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 김동전, 「18·19세기 제주도의 신분구조 연구—『대정현호적중초』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김창민, 「범주로서의 친족—제주도의 켄당」, 『한국문화인류학』 24, 1992
- 문숙자, 「양인의 혼인과 부부생활」, 『조선시대생활사』 2, 2000
- ———, 「조선후기 濟州 지역의 재산상속과 奉祀 관행—분재기 분석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81, 2006
- 은기수, 「19세기 전반기 제주사회의 신분과 혼인—『사계리호적』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연구』, 나남출판, 2003
- 이성임, 「16세기 양반관료의 外情」, 『古文書研究』 23, 2003
- 이훈상, 「조선시대 읍치사회의 구조와 제의—향리집단의 정체성 혼란과 읍

치사회의 유희화」, 『역사학보』 147, 1995

- 정승모, 「통혼권과 지역사회체계연구」, 『한국문화인류학』 15, 1983
- 정지영, 「조선후기의 첩과 가족질서」, 『사회와 역사』 61, 2004
- 조강희, 「영남지방의 혼반연구—진성이씨 퇴계과 종손을 중심으로 한 추적조사」, 『민족문화논총』 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84
- \_\_\_\_\_, 「전통사회의 혼인에서 지연의 문제」, 『민족문화논총』 16, 1996
- 조은· 조성윤, 「한말 서울지역 첩의 존재양식—한성부호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1, 2004
- 津波高志, 「濟州道の 通婚圈」, 玄容駿博士華甲紀念論叢刊行委員會 編, 『濟州道 言語民俗論叢』, 제주문화, 1992
- 한영국, 「府의 호구와 그 構成分布」, 『大丘市史』 1, 1973
- \_\_\_\_\_, 「조선중엽의 노비결혼양태—1609년의 울산부호적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75·76합·77, 1977·1978
- 許元寧, 「19세기 濟州島의 戶口와 賦稅運營」,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Pattern of Marriage Among Local Residents of Daejeonghyeon(大靜縣), Jeju-do, in the 19th Century : With Focus on *Village Daily Record* and *Census Register***

Lee, Seong-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attern of marriage among local residents in the 19th century based on *Village Daily Record*(大靜縣衙中日記)(1817~1818)and the census register of Dongseong-ri.

1) Village senior-officials, village officials and governmental slaves, who were residents verified by the daily record and census register, were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Among them, village officials put more emphasis on the marriage within the same social class rather than the marriage within the same community.

The marriage within the same community was not prevalent very much, but seemed to be combined with the marriage within the same social class. Village officials emphasized the cohesion among people of same social class more than the local proximity. In other words, the marriage was one of the means to sustain and strengthen the cohesion among them.

2) Governmental slaves were also subject to the power of authority like other slaves. In other words, they were ruled by local governmental authorities as they were considered the property of government, and could not marry freely because they were under the control of local officials or village officials.

It was a very serious social problem that local officials and village officials took governmental mistresses as their private mistresses or concubines. The government attempted to return those governmental mistresses to their original hometown in vain.

Village officials had more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vernmental mistresses in consideration that they control and supervised governmental

slaves. They easily turned governmental mistresses into their private mistresses or concubines, using their power and influence. The number of governmental slaves increased consequently as local officials and village officials took governmental mistresses as their private mistresses or concubines.

3) The chastity(the ideology of chastity) was not a concept internalized among lower class people in the 19th century. Though divorce was not institutionalized in Joseon Dynasty, divorce and remarriage were common among low class people. They did neither consider the faithfulness to single husband important nor give a significant meaning to the wedding ceremony. That was because low class people were financially pressed to the extent that they could maintain the marriage no more. Divorce and remarriage were common among low class people. Many women remarried with children of their ex-husbands.



Key words: local residents, *Village Daily Record*(大靜縣衙中日記)(1817 ~ 1818), the census register of Dongseong-ri,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mistresses as their private mistresses, chastity(the ideology of chastity), divorce, remarriage